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13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2019호로
마쳐진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 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1.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E를 근저당권자로 한 (1)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② F을 근저당권자로 한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각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2019호).

나. 그런데 위 각 근저당권은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및 F과 통정하여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으로서 피담보채무가 없어 각 원인 무효인바, 원고는 이미 F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7. 24. 선고 2019가단50374 판결, 2021. 3. 3. 확정). 설령 실제로 E이 D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함께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E 역시 원인 무효인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E은 2018. 9. 8. 사망하였으므로 E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원고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 B는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변론 종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